손해사정연구 제3권 제2호 2010. 08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기업의 니즈 및 인식실태평가*

(Evaluation of the needs and recognition for retirement pension members in Korea)

류건식** · 이상우***
Keonshik Ryu Sangwoo Lee

<국문요약>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314개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니즈 및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를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분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입기업들의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서비스 부실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확대,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는 핵심경쟁력인 서비스, 전문성 등을 보다 확고히 하고 건전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기초한 자산운용능력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 국문색인어 : 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 본 논문은 2010년 2월 18일, 한국보험학회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동계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전면 수정 · 보완한 논문임.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제1저자, keon@kiri.or.kr)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교신저자, swlee@kiri.or.kr)

Ⅰ. 서론

2010년 4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15.2%인 77,865개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약 16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장규모면에서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은 87.5%, 일본은 1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7%에 그치고 있어 퇴직연금 활성화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 및 니즈를 고려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인 보험회사 역시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 및 니즈를 파악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자세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 니즈 및 인식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실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고려요인, 퇴직연금사업자 경쟁력 인식 정도 등을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퇴직연금가입기업이 퇴직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1]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의 니즈 및 인식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퇴직연금 도입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2], 무엇보다 미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가입 경험이 퇴직연금제도에 대

1)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퇴직연금가입기업(총 1,679개기업)중에서 최종응답한 314기업(회수율 18.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2) 김원식 · 신문식(2008), p.58

한 인식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는데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퇴직연금 니즈 및 인식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 퇴직연금 니즈 및 인식실태 평가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제4장에서 제도개선과 경영전략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다.

Ⅱ. 선행연구

퇴직연금가입 기업의 니즈 및 인식실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제도의 도입이 일천하고 설문조사의 어려움에 기인한 바 크기 때문이다.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류건식 · 신문식(2004), 김원식 · 신문식(2007), 신세라(2008), 류건식 · 이상우(2009)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류건식 · 신문식(2004)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근로자 인식실태를 기초로 선호요인 및 도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안전성중심의 자산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쟁력 인식수준이 대체로 다른 금융회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경쟁력 인식정도를 연금자산 운용능력, 연금제도 설계능력, 교육 및 서비스제공 능력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체계적으로 경쟁력인식수준을 분석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선행연구인 김원식 · 신문식(2007)에서는 제도시행 이후의 현상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니즈와 계층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을 퇴직연금 가입자 및 미가입자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인식 및 니즈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신세라(2008) 및 류건식 · 이상우(2009)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경쟁력 인식수준을 안전성, 건전성, 서비스 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보험사, 은행, 증권사의 경쟁력 인식수준을 평가하고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심도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니즈 및 인식실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국외의 선행연구인 Current Popu1ation Survey(1997)에서는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유형별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분석하였으며, Tongxuan Yang(2004) 및 Wonku Hong(2004)는 퇴직연금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선택의 결정에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퇴직연금 선호요인 등에 한정하여 조사·분석이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영 차원에서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田村正雄(2004)는 2001년 신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제도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 및 운용상품을 이해하는데 속성별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고, 퇴직연금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경험이 있는 가입자가 그렇지 못한 가입자보다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운용방법 및 운용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투자교육을 담당하는 것보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입자의 속성에 따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투자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山崎俊輔(2008)는 확정기여형제도가 시행된 6년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확정기여형제도를 평가하여 세제 및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고자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회사가 기여하는 기여금이 얼마인지 또는 자신의 적립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잘 모르며, 이직 또는 퇴직시 퇴직(적립)금에 대한 자동 이관제도에 대해서 90%이상이 모르는 등 아직까지 확정기여형제도의 구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 많아 제도 가입자들의 낮은 인식 및 이해도가 향후 확정기여형 제도 활성화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서비스, 퇴직연금상품 선정시 고려요인,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 인식수준, 퇴직연금활성

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및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설문조사 대상 및 실태평가

1. 재산종합보험(Property Insurance)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1,679개(2009.8월말 기준)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방식에 의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314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원이 대상 기업의 인사 또는 복지담당 부서장을 일대일 개별면접하여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는 팩스를 통해 사전에 배포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다만, 설문지 응답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기간은 2009년 9월 7일부터 2009년 9월 24일까지 약 17일간이며, 설문조사형태는 5점 척도 방식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통계처리를 위해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학력, 현재 근무부서, 현 직장 근무기간, 직책, 급여수준, 회사업종, 회사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Ⅲ-1> 설문대상 및 방법

구분	세부내용	특징
설문대상 기업	- 퇴직보험 해지 퇴직연금 전환 기업 314개	보험연구원・KRC 공동조사
조사 형태	- 구조화된 설문지(척도방식 및 혼합형 병행)	
조사 방법	- 면대면 또는 FAX 병행	-
표본추출 방법	- 전체기업을 전수 조사(1,679개 기업) - 314개 기업으로부터 회사	회수율 16.7%
조사 기간	- 2009. 9. 7~ 9. 24(약 17일간)	-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인식실태와 관련된 9문항(퇴직연금 상품선택시 고려요인,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사후관리서비스 등)과 퇴직연금사업자 인식실태와 관련된 15문항(금융기관 선정시고려요인, 금융기관 경쟁력 인식정도, 금융기관 가입권유행태, 금융기관의 만족도 및 변경의향 등)으로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표 Ⅲ-2> 설문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문항수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항	- 퇴직연금 상품 선택시 고려요인 - 퇴직연금 활성화 개선사항 - 사후관리서비스 등	9
퇴직사업자 관련 문항	- 금융기관 선정시 고려요인 - 금융기관 경쟁력 인식 정도 - 금융기관 가입권유 행태 - 금융기관의 만족도 및 변경의향 등	15

응답자의 계층별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표 Ⅲ-3>과 같다. 업종별로는 제조/건설업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44.6%를 차지하며, 기업규모별로는 중기업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64.3%를 차지하여 가장 높다. 또한, 기업의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37.6%를 차지하며, 퇴직연금 가입 형태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응답자가 6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3>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

전체		사례수	전체%
		(314)	100.0
업종별	제조/건설업	(140)	44.6
	도/소매업	(36)	11.5
	운수업	(16)	5.1
	통신/사업서비스업	(36)	11.5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12)	3.8
	행정/보건/사회복지사업	(47)	15.0
	서비스업	(27)	8.6

전체		사례수	전체%
		(314)	100.0
기업 규모별	대기업	(47)	15.0
	중기업	(202)	64.3
	소기업	(65)	20.7
기업 소재지별	서울	(118)	37.6
	인천/경기	(56)	17.8
	대전/충남/충북	(34)	10.8
	광주/전남/전북	(35)	11.1
	대구/경북	(29)	9.2
	부산/울산/경남	(39)	12.4
	강원/제주	(3)	1.0
구 퇴직상품 가입금융기관별*	보험	(225)	79.5
	은행	(63)	22.3
	증권	(24)	8.5
현 퇴직연금 가입금융기관별	보험	(31)	9.9
	은행	(208)	66.2
	증권	(27)	8.6
	보험+은행	(18)	5.7
	보험+증권	(7)	2.2
	은행+증권	(10)	3.2
	보험+은행+증권	(13)	4.1
현 퇴직연금 유형별*	확정급여형	(212)	67.5
	확정기여형	(113)	36.0
	기업형개인퇴직계좌	(9)	2.9

2. 분석결과

1) 서비스제공 측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표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

연금을 가입한 기업 대부분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관련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들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는 사후서비스는 계약사항 안내가 67.5%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적립금 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58.6%, 가입자 교육 54.8%, 종업원 설명회 51.0%, 제도설계 컨설팅 45.5%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42.7%, 투자성향 분석 및 운용지시 41.1%, 취급실적 안내가 40.1%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적립비율 변경안내 (31.2%),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27.7%), 자산운용 보고서(25.5%), 수탁회사 보고서(23.9%) 등의 서비스 제공 응답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연금계리서비스와 재정건전성 검증 서비스의 경우 각각 8.3%와 12.4%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업들에게 50%이상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항목은 총 15개의 사후관리 서비스 중 4개 항목이고, 40%이상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4개이며, 20% 이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6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4> 가입한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 실태 (N=314)

서비스 항목	계약 사항 안내	운용현황 기록/ 보관통지	가입자 교육	종업원 설명회	제도 설계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투자성향 분석 운용지시	취급 실적 안내
%	67.5	58.6	54.8	51.0	45.5	42.7	41.1	40.1
서비스 항목	적립 비율 변경안내	운용 방법 제시	자산운용 보고서	수탁 회사 보고서	재계산	재정 건전성 검증	연금 계리 서비스	기타
%	31.2	27.7	25.5	23.9	20.4	12.4	8.3	-

주) 복수응답 포함

또한 회사규모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실태를 보면, <표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사후관리 서비스를 많이 제공받고 있는 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제도설계 컨설팅(55.3%), 연금계리 서비스(19.1%), 투자성향분석 및 운용지시(46.8%), 취급실적 안내(46.8%), 적립금운용방법 선정・변경(48.9%), 적립금운용 현황기록・보관・통지(68.1%), 적립금운용 방법제시(34.0%), 가입자교육(70.2%), 재계산(25.5%), 재무건전성 검증(21.3%), 적립비율 변경안내(34.0%), 자산운용 보고(31.9%)의 항목에서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수준이 높은 항목은 종업원 설명회(54.5%)과 적립비율 변경안내(34.2%)뿐인 것으로, 소기업은 계약사항 안내(80.0%)과 수탁회사 보고(27.7%) 항목에서 다른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금계리 서비스(17.6%), 종업원 설명회(14.7%), 취급실적 안내(17.6%), 적립금운용 현황기록・보관・통지(11.2%), 가입자 교육(21.0%), 재계산(14.7%), 재무건전성 검증(13.6%), 적립비율 변경안내(14.0%) 등과 같은 사후관리서비스에서는 대기업과 소기업과의 제공수준차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등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Ⅲ-5> 회사규모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단위: %)

	대기업	중기업
사 례 수	(47)	(202)
제도설계 컨설팅	55.3	43.1
연금계리 서비스	19.1	7.9
종업원 설명회	53.2	54.5
투자성향분석 및 운용지시	46.8	40.1
계약사항 안내	66.0	63.9
수탁회사 보고	25.5	22.3

	대기업	중기업
취급실적 안내	46.8	42.1
적립금운용방법 선정・변경	48.9	40.1
적립금운용 현황기록・보관・통지	68.1	56.9
적립금운용 방법제시	34.0	25.2
가입자교육	70.2	53.0
재 계 산	25.5	22.3
재무건전성 검증	21.3	11.9
적립비율 변경안내	34.0	34.2
자산운용 보고	31.9	24.8

금융회사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실태를 보면, <표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총 15개의 항목 중에서 11개의 항목에서 타 금융회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행은 우수한 항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퇴직연금 질적 서비스 제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보험사는 15개 항목의 사후관리서비스 중 연금계리서비스(9.7%), 투자성향분석 및 운용지시(54.8%), 계약사항 안내(80.6%), 수탁회사 보고(25.8%), 취급실적 안내(64.5%),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보관・통지(74.2%), 적립금운용방법제시(41.9%), 가입자교육(71.0%), 재계산(32.3%), 재무건전성 검증(16.1%), 적립비율변경안내(38.7%) 등 11개 서비스 항목에서 타 금융회사보다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사는 15개 항목의 사후관리서비스 중 제도설계컨설팅(51.9%), 종업원설명회(66.7%),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66.7%), 자산운용보고(37.0%) 등 4개의 서비스 항목에서만 다른 금융회사보다 사후관리서비스제공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6>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실태

(단위: %)

	보험사	은행	증권
사례수	(31)	(208)	(27)

	보험사	은행	증권
제도설계 컨설팅	45.2	40.9	51.9
연금계리 서비스	9.7	5.8	3.7
종업원 설명회	51.6	47.6	66.7
투자성향분석 및 운용지시	54.8	38.0	51.9
계약사항 안내	80.6	66.3	77.8
수탁회사 보고	25.8	23.6	18.5
취급실적 안내	64.5	33.2	48.1
적립금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45.2	39.4	66.7
적립금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74.2	53.8	59.3
적립금운용 방법제시	41.9	24.0	37.0
가입자교육	71.0	47.1	63.0
재계산	32.3	18.8	11.1
재무건전성 검증	16.1	10.6	7.4
적립비율 변경안내	38.7	28.8	18.5
자산운용 보고	25.8	22.1	37.0

이상과 같은 금융회사의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사후관리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는 보험사가 타 금융회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퇴직상품선택시 고려요인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들은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때 높은 수익률 보다는 원금보장 가능성과 안정적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안정적 수익률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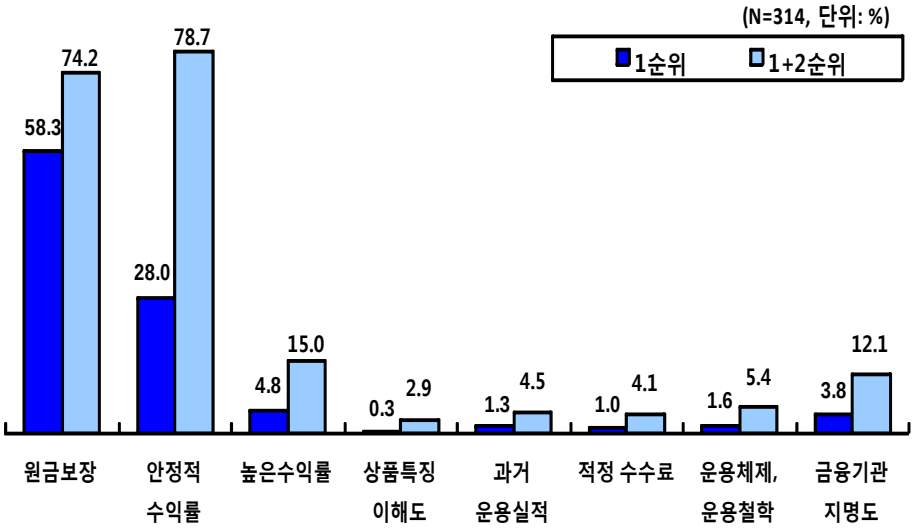

<그림 Ⅲ-1> 퇴직연금 상품선택시 고려요인

<그림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1순위 응답)으로는 원금보장 가능성(5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정적 수익률(28.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높은 수익률(4.8%), 금융기관의 지명도(3.8%), 금융기관의 운용 체제 및 철학(1.6%)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이 퇴직연금의 운영상품 선택시 안정적인 수익률(78.7%)이 원금보장(74.2%)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입기업들이 운용상품 선택시 안정적인 운용방법을 선호하는 현상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제도의 장래에 근로자에게 확정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에도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도록 하는 기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7> 기업규모별 상품선택시 고려요인

(단위: %)

	원금보장 가능성	안정적 수익률	높은 수익률	기타
대기업(N=47)	59.6	27.7	6.4	6.3
중소기업(N=202)	61.4	25.7	4.0	8.9
소기업(N=65)	47.7	35.4	6.2	10.7

기업규모별로 운용상품 선택시 고려요인을 살펴보면(<표Ⅲ-7>참조), 원금보장 가능성의 경우 중소기업의 응답이 61.4%를 차지해 가장 높고, 안정적 수익률의 경우 소기업(35.4%), 대기업(27.7%), 중소기업(25.7%)의 순으로 높아 소기업이 다른 기업들 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높은 수익률은 다른 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보다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요인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이 사업자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을 설문한 결과(1순위 응답), 퇴직연금사업자의 장기운용능력(50.0%),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24.8%), 전문성(14.0%), 높은 수익률(4.1%) 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Ⅲ-8>참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1순위와 2순위의 복수응답을 포함한 결과에서도 1순위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Ⅲ-8>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시 고려사항

(N=314, 단위: %)

	1순위	1+2순위
장기적인 자산운용 능력	50.0	82.8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	24.8	53.8
연금사업자로서 전문성	14.0	21.0
높은 수익률	4.1	13.1

	1순위	1+2순위
사후관리 서비스	2.9	13.7
접근 편리성	2.2	5.7
적정한 수수료	1.6	4.1
퇴직연금제도 설계 능력	0.3	3.2

또한 <표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별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시 우선적으로 장기적인 자산운용 능력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소기업(61.5%), 중기업(47.0%), 대기업(46.8%) 순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장기적인 자산운용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9> 기업규모별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시 고려사항

(N=314, 단위: %)

선택시 고려요인	기업규모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사례수	(47)	(202)	(65)
장기적/안정적인 자산운용 능력	46.8	47.0	61.5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	27.7	24.8	23.1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	21.3	14.9	6.2
높은 수익률	4.3	4.0	4.6
사후관리 서비스	0.0	4.0	1.5
접근 편리성	0.0	3.0	1.5
적정한 수수료	0.0	2.0	1.5
퇴직연금제도 설계 능력	0.0	0.5	0.0

이에 반해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27.7%), 중기업(24.8%), 소기업(23.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연금사업자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Ⅲ-10>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이유

(단위: %)

	은행(N=187)	보험사(N=27)	증권사(N=24)
전문성	1.1	33.3	12.5
장기운용능력	24.6	25.9	45.8
교육,컨설팅서비스	2.7	11.1	4.2
재무건전성	18.2	7.4	8.3
수수료	1.1	3.7	4.2
단기수익률	4.8	-	8.3
편리성, 신속성	9.1	-	-
사회적 인지도	-	3.7	-
다양한 운용상품	0.5	3.7	-
제도설계능력	0.5	3.7	4.2
자산성장가능성	1.1	-	4.2
타인선호	0.5	3.7	-
주거래금융회사	35.8	3.7	-
합계	100.0	100.0	100.0

특히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금융회사별로 해당 연금사업자를 선정한 이유를 설문한 결과, <표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을 연금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은 주거래 금융회사(35.8%), 장기운용능력(24.6%), 재무건전성(18.2%) 등이 주된 선정이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은행을 사업자로 선정한 주요 요인이 은행의 장기운용능력, 재무건전성 등보다 오히려 주거래 금융회사라는 점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보험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은 보험사의 전문성(33.3%), 장기운

용능력(25.9%),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11.1%), 재무건전성(7.4%) 등이 사업자로 선정한 주된 요인이라 보고 있으며 증권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은 장기운용능력(45.8%), 전문성(12.5%), 재무건전성·단기수익률(8.3%) 등을 사업자 선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

<표 Ⅲ-11> 현 가입 금융기관 선택 이유 : 기업규모별

(단위: %)

현 금융기관 선택 이유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사례 수	(44)	(177)	(62)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이 뛰어나서	11.4	6.2	4.8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능력이 뛰어나서	36.4	29.9	24.2
교육 및 사후관리서비스가 우수해서	0.0	2.8	6.5
금융기관으로서 재무 건전성 등 안정성이 높아서	25.0	14.7	16.1
수수료가 적정해서	0.0	2.3	0.0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2.3	5.1	4.8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0.0	0.6	0.0
퇴직 연금제도 설계 능력이 뛰어나서	2.3	0.6	1.6
연금 자산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3	0.6	3.2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서	0.0	1.1	0.0
금융 기관과 접근의 편리성 때문에	4.5	6.2	9.7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업자라서	0.0	0.6	1.6
주거래 금융기관이라서	15.9	29.4	27.4

기업규모별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표Ⅲ-11>참조), 대기업의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능력(36.4%)과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25.0%)의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운용 능력과 주거래 금융기관이라는 응답이 높아,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주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

금여력이 부족하여 기업대출 및 회사채 할인 등 자금조달에 대한 은행의 의존도[3]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 사업자 경쟁력 인식 수준 평가

(1) 사업자 경쟁력 인식 수준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장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등 9개 경쟁력 평가항목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금융회사의 경쟁력 인식 수준을 기술적으로 평가한 결과,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5개로 가장 많지만, 경쟁력 평가 합계 점수에서는 은행(32.56점)과 보험회사(32.50점)의 경쟁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사의 경우 평가 점수가 낮은 항목이 가장 많으며, 합계점수도 30.51로 가장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2> 전체 가입기업의 사업자 경쟁력 인식 평가

(N=314 / 단위 : 점 / 5점 만점)

항 목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전 문 성	3.49	3.75	3.36
장기운용능력	3.88	3.60	3.31
교육, 컨설팅서비스	3.29	3.72	3.41
재무건전성	4.09	3.68	3.31
수 수 료	3.32	3.22	3.18
단기수익률	3.32	3.60	3.70
편리성, 신속성	3.89	3.56	3.35
사회적 인지도	3.89	3.71	3.31
다양한 운용상품	3.39	3.66	3.58
합계	32.56	32.50	30.51

3) 중소기업의 차입 외부자금 조달의 비중은 은행이 7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책자금이 21.8%, 비은행 금융기관 3.9%의 순으로 높은 등 외부차입의 대부분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08.12, p.9).

<표Ⅲ-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은 장기·안정적 자산운용 능력(3.88점),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4.09점), 적정한 수수료(3.32점), 이용 편리성 및 신속성(3.89점), 사회적 인지도(3.89점)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타 금융회사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보험사는 전문성(3.75점), 가입자 교육·컨설팅 서비스(3.72점),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3.66점)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사는 높은 단기수익률(3.70점)의 항목에서만 타 금융회사보다 점수가 높아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Ⅲ-13> 금융회사의 경쟁력 인식 정도(현재 가입 금융회사별)

(단위 : 점 / 5점 만점)

구분		보험사 선정기업	은행 선정기업	증권사 선정기업
전 문 성	은행	3.10	3.58	3.30
	보험	4.10	3.65	3.59
	증권	3.39	3.26	3.63
장기운용능력	은행	3.94	3.92	3.70
	보험	3.90	3.50	3.48
	증권	3.10	3.22	3.59
교육, 컨설팅서비스	은행	3.10	3.31	3.30
	보험	3.94	3.63	3.52
	증권	3.42	3.30	3.59
재무건전성	은행	3.94	4.13	4.04
	보험	3.77	3.60	3.74
	증권	3.19	3.23	3.56
수 수 료	은행	3.10	3.39	3.07
	보험	3.13	3.21	3.11
	증권	3.13	3.16	3.15
단기수익률	은행	3.06	3.39	3.26
	보험	3.84	3.57	3.37
	증권	3.84	3.63	3.67

구분		보험사 선정기업	은행 선정기업	증권사 선정기업
편리성,신속성	은행	3.77	3.98	3.85
	보험	3.71	3.47	3.59
	증권	3.39	3.27	3.59
사회적 인지도	은행	3.84	3.97	3.74
	보험	4.00	3.63	3.56
	증권	3.45	3.18	3.56
다양한 운용상품	은행	3.26	3.42	3.33
	보험	3.87	3.60	3.59
	증권	3.58	3.49	3.85

다음으로는 보험사, 은행, 증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평가항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표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은 전문성(4.10점),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3.94점), 수수료(3.13점), 단기수익률(3.84점), 사회적인지도(4.00점), 다양한 운용상품(3.87점) 등 6개 경쟁력 항목에서 다른 금융회사보다 보험사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의 은행 평가에서는 장기운용능력(3.94점), 재무건전성(3.94점), 편리성・신속성(3.77점) 등 3개 경쟁력항목에서, 증권사의 평가에서는 수수료(3.13점), 단기수익률(3.84점) 등 2개 경쟁력 평가항목에서 다른 금융회사보다 경쟁력 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을 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3.58점), 장기운용능력(3.92점), 재무건전성(4.13점), 수수료(3.39점), 편리성・신속성(3.98점), 사회적 인지도(3.97점) 등 6개 경쟁력 항목에서 은행이 보험사 등보다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 평가는 전문성(3.65점),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3.63점), 다양한 운용상품(3.60점) 등 3개의 경쟁력 평가항목에서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쟁력 인식 차이 검증

퇴직연금 가입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장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 9개 경쟁력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와 은행간, 보험회사와 증권사간 경쟁력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보험회사와 은행간의 경쟁력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표 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는 전문성(3.748),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3.723), 단기수익률(3.596), 다양한 운용상품(3.656) 등에서 평균값이 은행보다 높아 이들 4개 경쟁력 평가항목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은행은 장기운용능력(3.876), 재무건전성(4.089), 수수료수준(3.315), 편리성 및 신속성(3.889), 사회적 인지도(3.895) 등에서 평균값이 보험회사보다 높아 이들 5개 경쟁력 평가항목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수수료수준을 제외(유의수준 5%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든 경쟁력 평가항목이 유의수준 1%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4> 보험사와 은행간의 경쟁력 비교

	평균값			종속표본의 차이검증	
	보험사	은행	차이	t값	p값
퇴직연금 전문성	3.748	3.487	0.261	4.631	0.000***
장기운용능력	3.596	3.876	-0.280	-5.752	0.000***
교육, 컨설팅서비스	3.723	3.290	0.433	8.340	0.000***
재무건전성	3.685	4.089	-0.404	-9.623	0.000***
수수료 수준	3.223	3.315	-0.092	-2.517	0.012**
단기 수익률	3.596	3.325	0.271	5.971	0.000***
편리성, 신속성	3.561	3.889	-0.328	-5.600	0.000***
사회적 인지도	3.713	3.895	-0.182	-3.315	0.001***
다양한 운용상품	3.656	3.395	0.261	5.033	0.000***

다음으로 보험회사와 증권사간의 경쟁력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는 전문성, 장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재무건전성, 수수수료수준, 편리성 및 신속성, 사회적 인지도 등 8개 경쟁력 평가항목에서 평균값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항목에서 증권사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증권사가 보험사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경쟁력 평가항목은 단기수익률(3.72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력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수준, 다양한 운용상품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Ⅲ-15> 보험사와 증권사간의 경쟁력 비교

	평균값			종속표본의 차이검증	
	보험사	증권사	차이	t값	p값
퇴직연금 전문성	3.748	3.382	0.366	6.331	0.000***
장기운용능력	3.596	3.328	0.268	5.374	0.000***
교육, 컨설팅서비스	3.723	3.424	0.299	5.822	0.000***
재무건전성	3.685	3.325	0.360	7.931	0.000***
수수료 수준	3.223	3.201	0.022	0.581	0.562
단기 수익률	3.596	3.720	-0.124	-2.556	0.011**
편리성, 신속성	3.561	3.366	0.194	4.602	0.000***
사회적 인지도	3.713	3.331	0.382	7.486	0.000***
다양한 운용상품	3.656	3.596	0.061	1.186	0.237

5)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1순위)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38.9%)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16.6%)와 중도인출 조건 완화(11.5%), 제도 형태 및 운영 구조의 다양성(9.6%) 등의 순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Ⅲ-16>참조). 2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48.7%), 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31.5%), 제도형태·운영구조 다양성(28.0%), 중도인출 조건 완화(27.7%),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2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및 근로자 세제지원, 수급권보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1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구분	1순위(%)	1+2순위(%)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	38.9	48.7
중도인출 조건 완화	11.5	27.7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	7.6	31.5
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	16.6	22.0
제도형태/ 운영구조 다양성	9.6	28.0
노후 준비 필요성 인식 강화	7.3	15.6
가입자 교육체계 마련	2.9	8.3
퇴직금 중간 정산제 폐지	3.8	9.9
당국의 제도 홍보 노력 강화	1.3	5.1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0.6	3.2

또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표Ⅲ-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는 중도인출 조건의 완화(42.6%), 퇴직금 중간 정산제 폐지(14.9%), 당국의 제도 홍보 노력 강화(6.4%)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러한 항목의 개선이 타 기업보다 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기업은 다른 기업들 보다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51.5%), 제도형태·운영구조 다양성(25.7%), 가입자 교육체계 마련(10.9%),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4.5%) 등의 개선이 더 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32.3%), 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33.8%), 노후 준비 필요성 인식 강화(21.5%) 등의 개선이 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나고 있다.

<표 Ⅲ-17>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1순위)

(N=314, 단위 : %)

개선 항목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사례수	(47)	(202)	(65)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	48.9	51.5	40.0
중도인출 조건의 완화	42.6	28.2	33.8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	21.3	28.2	32.3
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	21.3	27.2	33.8
제도형태/ 운영구조 다양성	14.9	25.7	15.4
노후 준비 필요성 인식 강화	21.3	12.4	21.5
가입자 교육체계 마련	6.4	10.9	9.2
퇴직금 중간 정산제 폐지	14.9	6.9	7.7
당국의 제도 홍보 노력 강화	6.4	4.5	6.2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2.1	4.5	0.0

IV. 결론 :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니즈 및 인식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의 수준이 미흡하며, 특히 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서비스 제공의 낮은 수준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향후 근로자가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는 연금자산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는 수탁자의 기본적인 책무로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4] 그러므로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

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 노력과 감독당국 차원의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대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서비스 제공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입기업들의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세 전환이 중요하며, 사후관리서비스 부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차원의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불만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연금계리, 재정건전성 검증 등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관련규정 강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금사업자의 기본적인 서비스인 적립금 운용자문에 대한 불만과 입금 및 지급 청구에 대한 불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가입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여 퇴직연금 가입기업 등 퇴직연금 수요자의 불만사항을 체크·확인·검증·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하고 타 금융회사보다 차별화하여 가입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가입기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즉시 반영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가입기업들은 퇴직연금 운용상품 선택시 원금보장 가능성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는 안정성중심의 운용상품 개발 및 적립금 운용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원리금보장성 및 안정적 수익률 등의 안정성 중심의 혼합형 상품의 개발과 기업규모별 특성과 니즈에 부합한 상품운용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가입기업들은 연금사업자 선정시 장기운용능력과 금융회사의 안정성, 연금사업자의 전문성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운용 능력과 전문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운용 위험관리기관으로서의 장점을 보다 확대하고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장기운용 위험관리 능력을 보다 극대화하여 보험사의 이미지를 제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고하는 노력이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요구된다.

넷째, 가입기업들은 연금사업자로서 경쟁력 인식 평가에서 보험회사와 은행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와의 비교에서는 보험회사가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경쟁력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재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들은 은행이 주거래 금융기관이라서 가입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경쟁요인과 무관한 비합리적인 요인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대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나 연금사업자 선정시 기업이 사업자 경쟁요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미국의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은행으로부터 조달받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입기업의 퇴직연금서비스 및 연금사업자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전환되도록 하기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적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으나 퇴직보험 해지기업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아 314개의 표본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전체 기업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가입·미가입 기업 및 근로자로 분석대상으로 확대하여 전체 수요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표본을 근거로 보다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원식 · 신문식,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경영학회통합학술대회, 2007

김원식 · 신문식 · 안승찬, “퇴직급여제도 도입·운용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동부, 2008. 12

김재현 · 정재욱 · 류성경 · 김성일, “퇴직연금시장 실태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9

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8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설명자료”, 2008.8.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용실태 조사보서”, 2010. 3

---------, “2008년기준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2006. 12

류건식 · 신문식,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전략”, 보험연구원, 2004. 12

류건식 · 이상우,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CEO Report 2009-4, 보험연구원, 2009.10

류건식 · 이창우, “선진국의 운용기관평가 및 시사점”, Working Paper 2009-1호, 보험연구원, 2009.8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용전략”, 경영보고서 2010-3호, 보험연구원, 2010.3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실태분석 및 향후과제”, Survey Report No1, 2008. 6.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은퇴자의 은퇴준비과정 및 은퇴실태 분석”, Survey Report No 2, 2008. 6.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기업의 퇴직연금 인식 및 운영실태 분석”, Survey Report No 3, 2010. 3.

중소기업중앙회,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08.12

厚生勞動省, “厚生年金保險と國民年金にたする年金積立金運用報告書”, 2005.10.

厚生勞動省, “確定給付企業年金法施行令と勞動省通知”, 2008

田村正雄, “確定醵出年金制度の運用實態に關する調査硏究”, 厚生勞動省, 2004.3

第一生命ニコ-ヨ-ク401(k)研究會 編著, “401(k)フラン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會, 平成 11年 4月.

社團法人日本生活福祉研究機構, “アンケート調査結果報告書”, 2002.10.

日本生命保險文化 センター, “2002 企業の福利厚生制度に關する調査”, 2003.5

坪野剛司, “新企業年金(第2版): 制度選擇と移行の實際”, 日本經濟新聞 社, 2005. 4.

富士總合研究所 企業年金コンサルティング室編, “確定據出型 年金導入”,日本法令, 平成12年 4月

山崎俊輔, 確定據出年金に關する實態調査, 企業年金聯合會, 2008.3

Byrne. A., 2007, "Employee Saving and Investment Decisions i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s: Survey Evidence from the U.K.," Financial Service Review, 16: 19-40.

Current Popu1ation Survey, 1995. 3.

Kapinos, K., 2009, "On the Determinants of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Conversions," Journal of Labor Research, 30: 149-167.

N.G.Terry and P.J.White, 1997,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and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 160-175.

Plansponsor, '2008 DC SURVEY'

Rozinka, E. and W.Tapia, 2007," Survey of Investment Choice by Pension Fund Members," OECD Working Paper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 1-49.

Tongxuan Yang, “Understanding the Defined Benefit vs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Choice”, ARIA, 2004, 8.

Wonku Hong, “The Effect of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on Retirement” ARIA, 2004, 8.

Yoshida, K. and Y.Horiba, 2003, "Japanese Corporate Pension Plans and the Impact on Stock Pric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0: 249-268.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Meeting Your Fiduciary Responsibilities, October 2008.,P. 6.

http//www. Plansponsor.com.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retirement pension members' needs and recognition on retirement pension schemes. As results of our analysis, First, it is required to strictly regulate on unfair invitation to join retirement pension schemes.

Second, members are dissatisfied with the insufficient provisions of post-management services, therefore regulators should investigate on the poor post-management services.

Third, Moreover, to activate retirement pension schemes regulators should consider reformation of systems such as reinforcement of protecting vesting rights, expansion of tax benefit. Especially, based on the core competence such as soundness and specialty, insurance company should secure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asset management capability.

※ Key Words : Retirement Pension,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